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지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01 발의연월일: 2025. 5. 13.

발 의 자:한지아·고동진·서일준

박성훈・김 건・백종헌

진종오 • 조경태 • 김기웅

정성국 · 김소희 · 이상휘

유용원 · 김재섭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국세, 관세, 지방세 또는 양육비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런데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의 증가 추세에도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.

이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등을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 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개정안을 발의 하고, 그에 맞추어 현행법에 법무부장관이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50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794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8호(종전의 제7호) 중 "제6호까지의"를 "제7호까지의"로 한다.

7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요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국금지요청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 험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20794호 출입국관리법 일	법률 제20794호 출입국관리법 일		
부개정법률	부개정법률		
제4조(출국의 금지) ① 법무부장	제4조(출국의 금지) ①		
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		
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			
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			
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.		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7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83조		
	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요		
	<u>청</u>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		
<u>7</u> . 그 밖에 제1호부터 <u>제6호까</u>	<u> 8</u> <u>제7호까</u>		
<u>지의</u>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	지의		
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			
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			
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			
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			
으로 정하는 사람		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